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적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과 표리일체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할지라도 여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만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는 매우 모호하게 ‘정정’을 규정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피고의 주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서 국민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건 심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의 원고는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 8. 2.

위 원고 이마리오 (인)

서울지방행정법원 귀중

서울행정법원

제 2 부

판 결

사원고	2002구합26105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현, 김상규
판결선고	2002. 10. 16 200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심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1.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심지지문(十指指紋)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심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 14. 원고에게,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정정청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원고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상정보의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13.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증거]갑 1의 2, 갑 4

2. 원고의 주장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무인한 십지지문의 원지를 범죄수사목적의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원고의 정보제공목적 및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십지지문 채취제도는 그 자체로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냥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하고, 또 전산정보로 변환한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나. 법에는 정보주체가 갖는 정정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를 한 것인 바, 처리정보의 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제1조,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만일 '정정'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에만 한정한다면, 정보주체인 국민은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일단 한 번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불일치를 이유로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 그 자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원고에 대한 실제정보와 상이할 때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해석상 위 '정정'에 '반환·폐기 또는 삭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위 위헌인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의 폐기 또는 반환과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정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우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② 더 나아가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

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정정'이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가 실제의 그것과 상이할 경우 그 '잘못을 고쳐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의 정정뿐만 아니라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법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론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정정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을 이를 조사하여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정보자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처리정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이나 다른 법령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조리상 이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처리정보에 대하여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십지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법자인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충구권만을 인정하고 '반환·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위반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법 제14조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데, 위 법규정이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우선 법 제14조의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조항의 해석의 문제에 불과 하므로 (위 법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주장을 단순히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한편, 위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자98카기135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본안은 원고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 등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의 거부행위를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상 원고에게 처리정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가 쟁점인 바, 만일 원고가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법규인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강현
	판사	정태학
	판사	김성욱

서울행정법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2아147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주소 생략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현, 김상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신청 취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02구합26105호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본안사건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신청인은 2001. 11. 21. 상대방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의 십지지문(十指指紋)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하였다.

(2) 상대방은 2001. 12. 14. 신청인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소정의 '정정청구'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신청인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를 정하여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상정보의 반환 · 폐기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를 하였다.

(3)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13.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소제기

신청인은 상대방의 위 거부행위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2구합2610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해석상 위 '정정'에 '반환 · 폐기 또는 삭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3.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법자인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청구권만을 인정하고 '반환 · 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신청인의 주장을, 법 제14조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데, 위 법규정이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우선 법 제14조의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조항의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한편, 위 법 조항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단순히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한편, 위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자98카기135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신청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 등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한데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인이 상대방의 거부행위를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상 신청인에게 처리정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가 쟁점인 바, 만일 신청인이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법규인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2002. 11. 13.

재판장	판사	한강현
	판사	정태학
	판사	김성욱

원고

성명 : 윤현식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 *** *** **** *** ***

(연락처 : 000-000-0000)

피고 :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200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건국대학교 *** *** ****에 재학중인 자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2001. 2. 22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주민등록 지역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알려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신청을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란을 통하여 이메일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및 다음 달 2일에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담당부서에 의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왔으며, 3월 9일에는 원고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역시 이메일을 통해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01. 3. 15 피고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란을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4. 하지만, 피고는 같은 달 22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불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 주민등록 지역번호에 관하여

- 1)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2) 동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개인인적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등에서 이를 이용하여 출생지역분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차별에 악용될 개연성과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 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하여는,
 - 1)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대외비』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 2)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에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주민등록번호 판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3)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중복 생성, 인터넷 등에 이를 우선 사용하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4)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의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이러한 행정정보공개거부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가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의 거부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6. 먼저 이 소장의 제4항 중 주민등록 지역번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 1) 피고는 주민등록 지역번호가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그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대외비로 지정될 것인가의 여부 또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실체적 성격에 따라 비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헌법재판소 1992년 2월 25일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고),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지역차별의 개연성과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또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국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번호만으로 개인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번호만으로 개인의 출신지역, 성별, 출생일자,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열된 경우는 없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의 경우만 예를 든다고 해도 사회보장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의 현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감정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적·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이지 현재의 적당하지 못한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역감정 등의 불합리를 걱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연하자면 피고의 이와 같은 거부이유는 지역번호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 번호 부여체계 그 자체가 지역차별의 가능성이나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분류 및 번호부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부이유에서는 그 지역차별의 가능성 또는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과연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역번호의 부여체계가 행정구역의 편제에 따른 순차적 분류방식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때 그때의 행정구역의 존폐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따라서 일반인이 지역번호를 이용하여 지역차별이나 개인사생활침해에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지역번호의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대조하여 출신지역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역차별에 이용된다거나 개인사생활을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으며, 피고는 그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자의적으로 떠오르는 위험 또는 우려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고려만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3) 여기에 더하여 행정자치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는 중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지역의 말단 행정관서까지 그 전산코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산코드들은 특히 행정전산망 등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들이고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와는 달리 체계적인 순번에 따라 지역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숫자 또한 주민등록번호상의 지역번호보다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역번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행정관서의 코드로 인한 것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드는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부여된 지역번호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자치부 스스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7.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의 공개거부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피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대외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떠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대외비』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정보의 실체적 성격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정보가 사회질서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대외비』로 지정·관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사유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공개거부이유 중 제2점 내지 제4점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단지 행정관료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안일한 자세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각종 웹사이트를 통하여 오류수정번호의 기능이 공공연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여섯 번째 숫자의 경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민등록신고 당일 신고순위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그러한 정보가 과연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정보비공개결정의 이유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학력·성명·직업·건강상담표·남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예로 들었으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조합방법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이상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련번호의 경우 그 조합방법이 공개되어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행정자치부의 비공개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 개인에 있어서 달리 정보공개가 회피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2001. 1. 26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피고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미 법으로써 예방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행정자치부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사용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자동음성확인 전화서비스」를 설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그의 실명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반적 거래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보만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으면 그가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곧장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우려나 청소년의 인터넷 성인사이트가입 또는 신용카드 불법발급우려는 효율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주민등록번호관리체계는 피고의 우려와 같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은 야기될 가능성이 극히 적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더욱 적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3)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2001년 1월 26일자로 주민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미 주민등록번호 설명대조를 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오류수정번호에 의하여 오류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생성하였다 하더라도 실명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염려와 우려의 차원에서 해결되거나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뿐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4) 피고는 또한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등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그 악용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 등에 대하여 가지는 호기심이 비단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된다고 하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환언하자면, 청소년들은 성인사이트의 연령확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부모나 형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외국의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사례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만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년의 의식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만큼 그 이상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하등의 입증이나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채 단순히 막연한 추측만으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7. 결론 : 원고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을 근거로 2001년 3월 20일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 지역별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소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2호의 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2. 갑 제3호의 증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3. 갑 제4호의 증 :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보서 사본
(문서번호 주민 13210-302)
4. 갑 제7호의 증 : 미국 사회보장번호 조합방법에 대한 문서자료

서울행정법원 귀중

2001년 5월 일

위 원고 윤 현 식 (인)

서울고등법원

2002. 7. 18. 판결신고	①
2002. 7. 18. 원본영수	

제7특별부

판결

사건 2001누1677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현식(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xxx xxx xxx xxxx xxx xxx

피고, 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충일, 백충엽

변론종결 2002. 6. 2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9. 26. 선고 2001구23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가 2001. 2. 22. 피고에게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청구란을 통하여 이메일(E-mail)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3. 9. 원고에 대하여 이메일의 방법으로,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지역표시 번호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후단 두 자리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1. 3. 15. 위 홈페이지의 이의신청란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1. 3. 20. 원고에 대하여, ① 주민등록 지역별 번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당초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전국 읍·면·동에서 관리되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0. 8. 1.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대외지에 준하여 전산화일(file)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번호를 이용하여 출생지역 분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차별에 악용될 개연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고, ②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고유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에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중복 생성, 인터넷 등에 이를 우선 사용하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의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회신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고, 끝의 두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그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대외비로 지정될 것인가의 여부 또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실체적 성격에 따라 비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당해 정보가 사회질서나 국가안전보장 등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불만족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거나 대외비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공개의 거부사유로 불충분하다.

(2)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지역차별의 개연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번호만으로 개인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또한, 지역감정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적·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이지 현재의 적당하지 못한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역감정 등의 불합리를 걱정하는 것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지역번호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자체가 지역차별의 가능성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분류 및 번호부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야기하고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지역차별의 가능성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 역시 실증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3)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실명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 주장과 같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 역시 극히 적다.

(4)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게 되었고,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이미 주민등록번호 실명대조를 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원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5) 또한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등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 역시,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일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없이 단순히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소로써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요청하였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당초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에게,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인데, 그 중 앞의 1자리 숫자는 남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임이 명백하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

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중 위 앞의 1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와 같이 위 6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중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이 된다.

(2)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급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2000. 5. 경 인터넷에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실제 조합방법에 따라 정교하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조합해 뽑아주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국내 해커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이 수십 종 등록 유통되었는데, 합(咸)모씨 등 3인은 위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원하는 숫자만큼 확보한 뒤 이를 인터넷 유료 신용정보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그 중 거래내역이 없는 번호만을 추출한 다음 생활정보지 등에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따와 컴퓨터 스캐너로 조합,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작하고, 이를 제시하여 핸드폰 2백여 대를 산 값에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4천여 만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 경찰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성인전용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례, 전문 사기꾼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을 발급받아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 당시의 법으로는 위 주민등록번호생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 1. 26. 자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그 처벌 규정을 신설한 사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실명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도 가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허수 또는 복수의 가입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의 외형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 이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중에는 출생연도만 지정하면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형식을 지닌 무한개의 번호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중 아직까지 부여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가공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피씨통신 무료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의 유출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면 이러한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의 가중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형벌조항이 마련되었다 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완전

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의 조합방법을 공개하면 생년월일과 출생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쉽게 조합해낼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 사람의 출신지역을 알 수 있어 지역차별에 악용될 우려는 물론 당사자가 그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번호 그 자체로 신상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국민에게 이미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끝의 2자리 조합방법은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폐해를 고려해 보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끝의 2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악용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8.

재판장 : 판사 이영애

판사 김종근

판사 이창형

답변서

사건 : 2002두804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윤현식

피고(피상고인) : 행정자치부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피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는 위 항소장을 2002. 10. 5 송달받았습니다.)

제 1 점 :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 중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지역번호)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166호)에 따라 II급 비밀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고, 또한 동항 제3호에 규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며, 상고인이 2002. 10. 5 제출한 상고장(상고이유서)에는 새로운 주장사실이 없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누16776)판결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제 2 점 :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1.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의 법적 적용을 잘못한 판결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상고인)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과의 연관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이든 보안업무규정이든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로 할 것인지, 비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 언급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에 관한 정보공개의 여부는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기관의 내규나 훈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규나 훈령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알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국정원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며,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민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4조 내지 제13조에 비밀의 구분, 비밀의 취급, 비밀의 분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이를 근거로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정보공개법과 보안업무규정의 연관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원심판
결은 오해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상고인)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되어도 범죄에 도용되거나 차별에 이용되는 등 불미스러운 현상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은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인 오류 수정번호의 알고리즘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이 설령 공개된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의 생성이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의 조합방법으로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지역번호포함)이 공개될 경우에는 상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 외에도, 누구라도 쉽게 허위주민등록번호를 만들기가 쉬워져 범죄도용 등 악용사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번호공개로 인하여 지역차별 우려 및 출신지 등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제 3 절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고인의 주장처럼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10.15

위 피고 소송수행자 김충일 (인)
백충엽 (인)
박봉주 (인)

대 법 원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첨 구 인

유현식

(주소 생략)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0층

(전화 : 02-3430-4300, 팩스 : 02-3430-4200, e-mail : lit@horizonlaw.com)

담당변호사 이은우 이행규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거부한 처분

첫 구 월 이

1.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또한 전국민에게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게 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제도라는 소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 기초 지방의회 의원선거(이하 '6. 13. 지방선거'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청구인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은 선거시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주민등록증이나 (ii)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7조 제2항은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 중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한 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4. 25.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윤현식의 질의에 대한 회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인우보증서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 이에 따라 2002. 6. [7].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은 미진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구인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무소에 6. 13. 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2.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이미 종료되었고, 6. 13. 선거도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위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3.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굴절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느냐의 여부가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며 생명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나. 이처럼 선거권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i) 그 제한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ii)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은 가장 권리침해가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iii) 보다 더 권리를 제한하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선거에서의 본인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시의 본인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일체 부정하고, 행정청이 편리한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

공서에게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입니다.

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다른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웃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만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도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요구하는 주의 경우도 증명서로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청구서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에 투표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본인 확인만 받는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는다 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더라도 확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느냐 아니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행정청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느냐 아니냐, 행정청의 업무량이 많아지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아.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선거부정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발로일 뿐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비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일 뿐입니다.

자. 또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헌임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강내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8층 (우 : 135-934)

담당변호사 조광희, 문건영, 여영학

(Tel : 3458-0966, Fax : 3487-3811)

피청구인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권상

2. 한국방송공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위원장 이성춘

청구 취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 신청에 대하여 2002. 4. 10.한 편성불가 의결 및 같은 달 12.한 편성불가 통보행위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입니다. 청구인은 주된 사업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물적 기반 구축, 정보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 편성신청을 하였으나,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명칭은 청구인이 행하는 여러 사업 중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부문에 한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명칭입니다(www.jinbo.net). 그리고 청구인은 세무서에 '진보네트워크'라는 명

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을 약칭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 관련 규정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

3. (운영주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법시행에 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제작자 및 프로그램의 선정과 제작관리 등 운영을 담당한다.

4. (시행세칙) K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해서 공표, 시행한다.

6. (프로그램 선정절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심의와 KBS로부터 기술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운영자) KBS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두고, 운영협의회가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46조(사전심의) ①운영자는 편성신청자로부터 제작완료된 프로그램 테 이프와 대본을 접수 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KBS 심의평가실에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이의신청) ①시청자는 운영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2001. 7. 경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에 청구인이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2001. 7.경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만 합니다)에 위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이마리오를 한 번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협의회에서는 내용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대본을 더 자세하고 길게 써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1. 14. 피청구인 운영위원회에 기획안, 큐시트, 대본, 프로그램 제작일지, 제작비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송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참조).

이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1. 23. 제15차 운영협의회에서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 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부분, 박정희 생가 장면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이 이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성 여부를 재심사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의결사항 참조).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비속어에 "빼"음을 삽입하고,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을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로 수정한 후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으며, 자료화면 사용시 우측 상단에 자료화면임을 명기하여 3가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용할 수 없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2. 2. 16. 수정된 내용과 함께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의견서 참조).

그러자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2. 19.에 제16차 운영협의회, 2002. 3. 13.에 제17차 운영협의회를 열고 내용의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재수정 요구에 따라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편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의결사항 참조). 재수정을 요구한 내용은 비속어 사용 장면(행자부 공무원 인터뷰 뒤 홍석만의 '미친놈'이란 발언 부분)의 삭제, 공무원 등장 장면의 방송 공표 등의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 재확인시켜줄 것과 동의범위에 따른 적법한 조치(촬영거부 장면 삭제, 음성 변조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 4가지 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요구받은 비속어 사용 장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장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과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운영협의회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의견서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4. 10. 제18차 회의를 열고, 청구인이 다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제16차 회의 및 제17차 회의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의결을 하였으며, 2002. 4. 12. 이를 청구인 측에 통보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의결사항 참조).

마. 청구인은 이와 같은 의결 및 통보(이하 '이 사건 의결 및 통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2. 5. 8.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8조에 따라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이의신청서 참조). 그러나 이의신청은 그 기각의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채 기각되었으며, 단지 기존의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결정이 정당했다고만 통보되었습니다(갑 제13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참조).

4.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이 사건 의결 및 통보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 또는 사상의 표명과 그 전달의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 중 액세스권이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 액세스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현제도 하에서 선거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상시적인 국민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정당이 마비되어 있을 경우, 언론이 여론 형성과 그 전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맡은 이러한 공적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시설이 재벌기업이나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고 상품화되는 경향 때문에 언론은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는 매스컴 운영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정형화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액세스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실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민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제43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제44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 1. 12. 통합 방송법을 법률 제6139호로 제정하면서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영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의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구현 방법인 액세스권의 실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동법 시행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위 2의 규정들과 함께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서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와 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 실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가 한 이 사건 의결 및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전을 이용한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를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갑 제17호증,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공영방송사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토론회의 개최기관으로서 선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자유 실현의 중대한 역할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보충성

청구인은 2002. 5. 8.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8조에 따라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02. 7. 2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결정은 행정쟁송과 같은 구체절차를 사전에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 97헌마372 사건에서 '토론회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론회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중략)..토론회위원회의 결정을 다툼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우회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상 구체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전에 구체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의결 및 통보의 위헌성

가.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의결

- (1) 3.의 다, 라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제16, 17차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첫째, 비속어 사용의 삭제, 둘째, 행자부 공무원 출연에 따른 초상권 침해의 해소, 셋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넷째,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첫번째 요구에 대해서 명백히 이를 수용,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 나머지를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청구

인 운영협의회의 요구는 극히 부당하거나 청구인이 그 요구를 충족하였습니다.

- (2) 공무원 출연에 따른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공무원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의 방송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시 그 범위에 대해 본 협의회에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노창권 사무관에게 2001. 3.부터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전화와 공문을 통하여 했고, 2001. 4.경에는 인터뷰 내용을 함께 조정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창권 사무관은 2001. 5. 4.에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연출을 담당한 이마리오와 약속을 하고도 촬영 당일에 와서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마리오는 "그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나올 때는 검은 화면에 소리만 나오게 되겠네요"라고 말했고 노창권 사무관은 "뭐 그렇게 처리하던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위 이마리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홍문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시겠다는 거죠?"라고 물었고, 노창권 사무관은 "예, 뭐, 맘대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노창권 사무관의 목소리 사용에 대한 동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갑 제10호증, 의견서 첨부서류 참조) 공무원이 등장하는 장면의 방송공표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협의회에 재확인해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3) 세 번째 요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요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삭제가 요망되는 이유로서 내용합치 여부 및 논리적 타당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자막으로 표현했듯이 주민등록법은 1961년 박정희의 5. 16 쿠데타 이후 1962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민증과 시민증이라는 형태로 신분증이 발급되었으나, 1968년의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만들었으며, 1975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면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끝에 박정희 생가가 나온 이유는 이 제도의 출발이 박정희였으며 문제의 근원이 누구한테서 출발했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위 장면은 내용합치 여부나 논리적 타당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의 결정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 (4) 넷째 요구사항은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러한 요구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제목이 어떤 심의규정에 위반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이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는 시청자들의 의식수준을 일부러 낮게 잡고 그들을 교육이나 순화의 대상으로만 삼는 가부장적 태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은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방송하려는 내용 어디에도 직접 주민등록증을 찢거나 이를 고무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보고 '나도 주민등록증을 찢어 버려야지'라는 판단보다는 '주민등록증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찢어 버리라고 주장하는가?'라는 의문이 선행하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리고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제기 또는 비판적 성찰의 가능성의 부여야말로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자,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 (5) 결국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의결은 이유없는 것이며, 이는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표현의 자유의 침해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액세스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 액세스권이 표현의 자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완전히 전문화된 TV가 아주 많은 양의 정보와 오락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과정이 사라진 현실에서 액세스 채널은 공적인 토론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받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다원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외국 프로그램의 예

(가) 퍼블릭 액세스운동은 60년대말 캐나다영화위원회(NFB)가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s for Chang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개념은 고이윤을 창출하며 지배적 여론을 형성하는 상업적 미디어가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개념은 표현의 자유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동안 진행된 미국 퍼블릭 액세스 연합의 심의 거부 및 편성권 확보 투쟁의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심의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편성은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미국과는 달리 지역 민중 공동체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공동체TV'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퍼블릭 액세스'가 개방된 TV에 대해 접근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공동체 TV'는 지역 공동체의 방송사에 대한 소유, 운영의 권리 및 그 것의 지역 내에서의 진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개방 채널(Open Channel)'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개방채널은 라디오와 TV라는 매체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송 설비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선착순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프로그램들을 선착순으로 방송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편집상의 개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방송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유럽의 개념은 소수자 방송 및 지역 공동체 방송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상당수 제작 송출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규정 방식
이러한 외국의 예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0. 1. 12. 통합 방송법 제정에 이르러서야 퍼블릭 액세스 조항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편성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시행령이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최소시간 분량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는 편성방식, 방송시간 대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방송심의위원회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방송사의 자율심의에 맡기고 있는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심의'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제작신청인이 운영자 및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기획 및 제작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40조 제2항).

(4) 소결
뒤늦게 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진정한 의의를 살리고, 앞으로 올바르게 이와 같은 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선착순으로 무심의 방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도리어 이 사건의 결은 과도하고 부당한 심의를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를 위해서는 위협이 명백하고 혼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다. 평등권의 침해
퍼블릭 액세스의 구조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지극히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근저에 갈린 보편적인 성격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발언의 공간을 제공" 한다는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류 미디어의 균원적 한계, 그리고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매체 생산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는 사회 내의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결 및 통보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의 결 및 통보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소수자 보호에 반하며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기획안 |
| 1. 갑 제2호증 | 기획의도 |
| 1. 갑 제3호증 | 대본 |
| 1. 갑 제4호증 | 큐시트 |
| 1. 갑 제5호증 | 제작일지 |
| 1. 갑 제6호증 | 제작비 견적서 |
| 1. 갑 제7호증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1. 25.) |
| 1. 갑 제8호증 | 의견서(2002. 1. 25.자 통보에 대하여) |
| 1. 갑 제9호증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3. 15.) |
| 1. 갑 제10호증 | 의견서(2002. 3. 15.자 통보에 대하여) |
| 1. 갑 제11호증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4. 12.) |
| 1. 갑 제12호증 | 이의신청서 |
| 1. 갑 제13호증 |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보 |
| 1. 갑 제14호증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기준 |
| 1. 갑 제15호증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침 |
| 1. 갑 제16호증 |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
| 1. 갑 제17호증 | 판결(1998. 8. 27. 97헌마372) |
| 1. 갑 제18호증 | 정관 |
| 1. 갑 제19호증 | 조직도 |
| 1. 갑 제20호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첨부 서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청구서 부본 | 3통 |
| 1. 위임장 | 1통 |
| 1. 등기부등본 | 1통 |

2002. 8. 22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여 영 학

문 건 영

헌법재판소

귀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결정

사건 2002초기23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유영재(주민번호)
 (주소생략)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주문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2고단1144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02. 2. 1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민중연대 등이 개최한 “부시미국대통령 방한반대 시국농성돌입 및 기자회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는 유태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데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위 지역 관할경찰서장이 17:00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집회참가들에게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사2계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 및 위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서 일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없자, 담당경찰관이 십지지문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북부경찰서장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서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들(신청대리인

들)은 2002. 2. 25.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장 없이도 지문채취를 강제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는 제도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아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료화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청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적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고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채취가 강제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 제3항(영장주의), 제1항(적법절차), 제19조(양심의 자유), 제10조(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된다.

3.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제42호 (지문채취불용)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 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구류형의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되는 법규정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가능여부 즉 유·무죄가 판가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정식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피의자에게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지문채취를 하려고 하는 것에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지문채취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 · 구속 ·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께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께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먼저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요구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그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임의로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때에 이를 강제한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 지문채취는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한 수사의 진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이 지문을 채취하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로 정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지문채취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수사진행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목적을 위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검증영장(지문의 채취는 사람의 손가락의 형상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검증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나 구속 등에 부수한 절차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신속 · 긴급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채취에 불용하는 피의자를 벌금, 구류, 과료의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영장주의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규제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자

기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피의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영장주의의 통제를 회피해 가려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여러 가지 이유(자신의 동일성을 숨김으로써 범죄사실 자체가 은폐되길 원하거나, 자신의 명예훼손이 두렵거나, 자신의 전과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등)로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사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받는 피의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하거나, 위와 같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여 그 신원을 밝혀내던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고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신원을 파악하고 그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채취에 불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여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적법한 절차) 위반여부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찰공무원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준수를 형벌로써 강요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그러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신원을 밝히는 것이 수사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의 합헌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그 복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하여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입건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혀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없는 이상(이는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의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이며 대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관, 법원의 인정신문에 대하여 묵비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의 행사라고 이해한다) 피의자가 여하간의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불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죄를 밝혀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강제처분의 권한으로 충분히 피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 더하여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로서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가 요청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4)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에는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요컨대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자,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지문채취제도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채취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지문채취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문채취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위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2항, 제19조에는 위반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제1항 후문에는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헌심판 청구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범석

행동지침 및 기타



020308 [질의] 선관위 신분증 인정 문의

021219 [지침]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021121 [지침/보도]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에 대한 취재 보도 협조 의뢰

021130 [지침/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030218 [지침]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자 지침

021210 [대선]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보도취재 의뢰

020730 [문서] 시도별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021015 [서명] 지문날인제도 철폐 서명운동 서명용지

011009 [설문]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피해사례 설문조사

paper [자료] 지문날인반대연대 선전물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문서 번호 2002 - 01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조 사무처
날 짜 2002년 3월 8일
답 당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011-202-9097 이메일 finger@jinbo.net)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1번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목 신분 증명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대한 요청
분 량 총 2매

1. 귀 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여러 네트워크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지난 1999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귀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4.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 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30>

나. 규칙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②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98.4.30>

<아래>

선거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 규칙 제82조 ②항의 신분 증명 방법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위 조항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서 사진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 같은 조항에서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현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학생증이나 학생카드를 이용한 신분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2) 만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증명 서류를 발급해줄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3)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 발급 자격증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도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명이 가능한 기타 방법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 행동지침 :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신분 증명을 거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됩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분을 직접 확인했던 동사무소에서, 선거 때는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적 이유로 신분증명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 12월 7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2시~5시 / 대학로)

지문날인 반대자의 참정권 보장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한 마지막 거리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12월 7일 선전전은 지난 9월부터 격주간 대학로에서 진행되어 온 대국민 선전전의 마지막 자리로서,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와 행동 지침이 발표될 것입니다.

○ 때와 장소 : 12월 7일 오후2시~5시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 선거일 전에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인쇄물(첨부문서 3~6쪽), 도장, 사진

2. 1번의 준비물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투표시 신원확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서류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동사무소에서 신분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동사무소 방문 일자, 방문 시간,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 창구 직원의 이름, 발급거부 사유,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첨부한 양식 7쪽)

4. 신원확인을 거부당한 사람은 3번의 내용을 근거로 법정 소송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2000년 총선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한 표에 50만원씩 산정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함 (2002년 11월 27일 일간지 기사 참고)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 참정권 박탈과 관련한 헌법소원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4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1항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 전화(02) 503-2790 / 전송(02) 503-1539
지도과 법규제도팀장 이성룡 사무관 박세자 담당자 김승주

문서번호 지도 3001 - 502

시행일자 2002. 4. 25

받음 윤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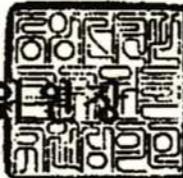
참조

제 목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귀하의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불임 질의회답문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문】 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규칙 제82조제2항의 신분증명 방법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주민등록증이 없어 대체 신분증을 전혀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 예를 들어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전업주부의 경우 여타의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해당하는 증명서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성명, 사진 등), 발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사례가 적절한 것인지, 이런 신분증명서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사립대학교의 학생증이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원확인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의 학생증

나. 일반기업의 사원증

다. 인우보증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인보증

라. 상기 등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등

(2002. 4. 16 윤현식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등)에 정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제5호의 농협·수협 등의 조합, 같은 항 제6호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립·운용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등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인우보증서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임.

(2002. 4.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투표장 신원확인용 민원서류 발급거부 확인서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도로명 주소	담당자 (성명) (직위)
확인 일자		
발급 요청자 (성명) (주소)		
발급거부사유		
근거법률 또는 내규 및 훈령		
구체적 사유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신인
발신인
제목
담당
매수
날짜

인권·사회 담당
지문날인 반대연대 ※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에 대한 취재·보도협조 의뢰
윤현식 (011-202-9097), 김한울
7장
2002.11.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트워크 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습은 법률적 근거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현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시험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거를 확인해 보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의 제 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 첨부문서 1쪽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

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병행할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3. 계속해서 지문날인 반대자가 위 2의 근거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니, 이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편의적 절차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동의시에만 지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음(상기 관리단 업무지시) * 첨부문서 3쪽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문날인은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문날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옹시자에게 정해진 대체신분증만 있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날인 없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만 이루어지면 지문날인 반대자도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아래 절차를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날인 없이 지문날인 반대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 그밖의 증명서(공무원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 전역증, 교원자격증, 국 · 공립대학 학생증)를 소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원서 접수

②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첨부문서 3쪽의 내용을 제시하며, 지문날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

③ 이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4.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취재 ·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2. 경찰청정보공개
3. 운전면허관리공단 공문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장 면허시험 응시절차등

제4조(옹시원서 접수절차등) ①법 제 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접수하되, 경찰서에서 접수한 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를 제외하고는 시험 2일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 통보되어야 하며, 그 세부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옹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동일 면허종별 시험에 2중응시 여부
3. 면허결격사유 및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 서식의 병력신고서 및 결격 전산조회에 의하여 정신질환 등 병력이 발견된 대에는 해당 질환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영 제52조의4제2항에 규정된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한다(적성검사신청서 접수시에도 이와 같다)
4.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6.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응시면제 대상에서 해당되는지 유무
7. 전문학원 수료 · 졸업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형사사건등에 의한 지명수배자인지 여부(지명수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인근 경찰관서에 신병을 인계 한다)
9. 영수필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의 확인
- ③옹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 응시종별, 응시일시, 수험번호, 면제과목 등 접수사항을 주전산기에 등록하고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한다.
- ④어느 1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 및 기능시험)를 합격한 사람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나머지 일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은 당해인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고무인 날인여부 및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나머지 시험만을 실시한다.

경찰청

우편

우 120-704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 전화 313-0674 경비 2153 / 전송 313-0673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교통기획담당관실 총경 박종국 경정 윤소식 경위 김용우

문서번호 교기 63340-2014

시행일자 2002. 08. 10

공개여부 (공개)

수신 김한울 귀하

참조

선 랑		지 시	
집	일자		
	시간		
수	번호	결	
		재	
처	리	공	
당	당자	합	
식	사자	심사일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1. 공개 청구내용

- 가.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전문
- 나.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증빙서류를 통한 본인 확인시,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의 내용과 그 근거규정
- 라.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증빙서류를 통한 본인 확인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과 그 내용

2. 회신내용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가.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전문

- 불임 참조

나. “나. 다. 라항”과 관련

-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로서 한 사람이 수종의 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응시원서 접수시부터 각 시험과정, 운전면허증 교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해도지침 미 기타
-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운전면허시험 실시전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기타 증빙서류(교기 63340-1608, '94. 12. 3)

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말하며, 공무원증, 공공기관·공기업체 신분증,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증, 병역수첩, 국·공립학교 학생증 등이 이에 해당됨

-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대리응시하는 사례가 많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업무지시(관리 63340-2119, '01. 12. 17)를 통해, 특히 위·변조가 용이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잠시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동의시어만 지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음(상기 관리단 업무지시)

붙임 :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사본 1부. 끝.

경찰청

전결 교통기획담당관 총경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문서번호 : 관리 63340-1915

시행일자 : 2001. 11. 16

(경유)

받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민원(시험)계장

제목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

1. 관련근거

- 가. 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 4조 (응시원서 접수절차 등)
- 나. 경찰청 교기 63340-927 (2000. 4. 25)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관련

업무 재강조지시

2. 위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시험 · 민원접수시 신분확인용 증명서의 인

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하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현행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 그 밖의 증명서
 - 공무원증, 공공기관 · 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 수첩, 병역수첩(전역증), 학생증(국 · 공립)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 지문대조 본인여부 확인

나. 필요성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너무 확대운영
-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 신분확인방법 개선 필요
- 주민등록발급 이전자 신분확인방법 통일

다. 통일방안

-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공공기관 · 공기업체 신분증, 여권,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학생증(국 · 공립대학)
 - * 사립대학 학생증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

- 고등학교 재학생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
- 고등학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확인
 - * 학생증 자체는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및 지문확인 병행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 민원인의 동의를 득한 후 확인 필요

- 연습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등 불인정

3. 행정사항

- 각 시험장장은 시험장 직원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
-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 끝.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장

전결 관리과장 총경 유홍겸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3.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각급 예비군 중대본부가 예비군 향방 훈련을 실시하는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였다.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난 총기무장사건과 관련하여 총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의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없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예하 예비군 사단에 임의로 지시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첫째,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둘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셋째,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넷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상의 정황을 살펴볼 때 향방훈련과정에서 군이 훈련참가자들의 지문을 채취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한 것은, 일선 예비군훈련관계자들이 지난번 발생했던 총기무장 강도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춘의 한 때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했던 예비군들에게 젊은 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기는커녕, 언제 무기를 탈취할지 모르고 또 언제 무장강도짓을 할지 모르는 잠재적 예비범으로서 예비군을 취급하는 물지각한 행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예비군들을 모욕한 행위이다.

비록 훈련과정에서 채취된 지문은 본인확인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목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국방부가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후 예비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2년 11월 3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1. 훈련부대가 예비군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행위이며 군 내부의 훈령 기타 내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채취에 대한 명령을 내린 바 없습니다.
3. 지문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4.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사인으로 대체합니다.
5. 지문날인을 강요할 경우 정식 공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문을 보여줄 경우 공문에 기록되어 있는 발신자, 즉 공문발신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6. 정식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하는 사람의 관동성명과 훈련부대, 동원일시 등을 세세하게 적은 후 국방부 예비군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7.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때는 6번의 사항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예비군 담당 (02) 748 - 5249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트워크 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자 지침

1.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신분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가의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4.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도 양보되거나 바꿔질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의 시작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962년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에 지문날인이 더해진 것은 북한의 무장 침투조가 남파된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눈을 뜬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제사항이 아니던 지문날인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실시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지나왔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만 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의 기원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기원은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던 만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동원할 물자와 인력을 식민지로부터 끌어써야 했기에 철저한 식민지 관리 통제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 규칙은 주민등록제도의 모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문날인제도 역시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을 색출하는 등에 사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입니다. 본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경우는 전세계, 전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개인정보와 국가감시

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개인정보 항목의 수는 140여 가지에 이릅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를 국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민기본대장법'이라는 일본판 주민등록법으로 소란스러운 일본에서는 지방행정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6가지 항목을 전산망으로 공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고, 국민은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지문을 열손가락 모두 빠짐없이 날인받아 국가가 아무런 제한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전국민의 지문을 관리한다면 지문은 몸에 새겨진 바코드와 같습니다. 실제 국가는 이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로 밖에는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범죄의 1차 용의선상에는 지문을 날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시작과 현황

1997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IC칩이 삽입된 전자주민카드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C칩에는 수많은 개인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감시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감시가 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이 반대여론에 밀려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린 후, 국가는 주민등록증을 종이 신분증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으로 바꾸면서 사진과 지문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부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만 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0대 거부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10대 거부)의 중요성

대부분의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만 17세 때에 이미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였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데에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0대 거부자가 없다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문날인 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문을 날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미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이에 비해 10대 거부자는 일상 속의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좀 더 균형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문을 가지지 않고 있기에 10대 거부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문날인제도는 유명무실한, 말 그대로 말뿐인 제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 대응방법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의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독촉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선 지문날인반대연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이나 지문날인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www.finger.or.kr>)나 지문날인반대연대 E-mail(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는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10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여 왔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위헌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지문날인반대연대가 도와드립니다

만의 하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었다면 즉시 지문날인반대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직접 도와드릴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법상 벌금과는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태료를 벌금으로 잘못 알고 매우 두려워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강요하면서 부과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제기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부과는 중지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것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의 법원 결정을 통해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부과를 정당하다고 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면 또다시 과태료부과는 중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 대신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부과는 중지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처분 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히 하면 '이의신청 -> 비송사건결정 -> 항고 또는 헌법소원'의 과정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법률에 의한 정당한 거부가 필요합니다.

10대 거부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일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미성년자는 혼자서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학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다가 일체의 지원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할 것이므로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수많은 10대 거부자 중 단 한 명만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보류가

됩니다. 또한 현재 10대 거부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분, 즉 만 17세 때 지문날인을 거부한 이후로 계속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4. 필요한 모든 지원은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해드립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관계된 일체의 지원, 즉 변호사의 선임 및 변론, 법원관련 업무, 제반 경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직접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신의 자식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휘말려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는 복잡한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일을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역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5. 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지문날인 반대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체의 지원을 직접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대체신분증을 만듭시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문제 외에도 신분증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대체신분증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 포함)

운전면허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아무런 차이 없이 신분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한 예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대체신분증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응시하여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 재학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고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 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기술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등)

국가기술자격증은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도 많고 가장 확실한 대체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http://www.q-net.or.kr/threeorfourview/ThreeOrFourView1.html>로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이나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http://license.korcharm.net/>) 혹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전문포털 사이트

(<http://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1차 신분증명서이지만 여권은 1차 신분증명서에 기초한 2차 신분증명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권 역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13세부터 17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문제로 인해 학생증 외에도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에 의해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어 병무청에서 병역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습니다.

국제학생증

국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해외 유학을 10대 거부자의 경우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ISIC와 ISEC가 그 것입니다. 이 중 ISIC는 유네스코본부 및 국제학생여행연맹(ISTC)에서 발행하는 학생증으로 좀 더 보편적이지만 학생신분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와 같이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ISEC 역시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이 아니더라도 만 26세 이하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의 상황과 의견을 나눕시다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이나 피해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문날인 거부라는 양심과 신념의 선택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항의하고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러한 자신의 사례를 다른 거부자들과 서로 나누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떻게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자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권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부당한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안과 보안이 철저하고 민원 편의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거부자들과 더 많은 반대자들의 힘을 모아 지문날인제도를 없애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T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수 신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발 신	하단 참조
제 목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답 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날짜(매수)	2002.12.10 (총 13 장)

보도자료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후보 기호 순서, 이하 동일한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등 다섯 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한동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의 답변을 받아 분석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활동 및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的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원회 독립 및 문광부 소관의 민간자율적 내용규제기구 설치 주장
- 김영규 후보,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및 주민등록제도 폐지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각 후보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밝힌 답변지를 보내왔으며 그 결과가 이들 시민단체에 의해 분석되어 발표되었다.

○ 네 후보는 몇 가지 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네 후보 모두 현행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지나친 제도이므로, 당장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 절감과 국내 IT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 대상 범위 확대, 초·중·고교 인터넷선 국가 부담 제공,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에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 한편 후보들간의 인식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정당의 두 후보와 진보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1만원 수준으로의 인하를 약속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 관해서 이회창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각각 산업 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의 자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만이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정책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가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김영규 후보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을 위한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소 도감 청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의 후보답게, 이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항 폐지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재검토 등 다수 공약을 수용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대다수 이슈에 대해 산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정보통신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담당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대표되는 현재의 내용규제 제도를 거의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기준과 사상 / 역사관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IT 산업 발전 중심의 현 정보통신부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다. 노 후보의 정책 대부분은 이회창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정보화촉진기금 축소에 반대하는 반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과 관련하여 사상 및 역사관에 관련된 조항은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노 후보의 개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 후보에게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문항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 후보는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집단적 동의권 인정 등 두 사안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 디지털 도서관 원격 접근 허용 ▲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등 정보통신부 이외의 부처들이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보화 관련 이슈 전반을 ‘이용자의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권 후보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기본권으로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권리 ▲ 정보 평등권(혹은 정보 접근권)의 세 가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민간자율 기구인 (가칭)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 ▲ 사생활보호법 제정 및 사생활보호위원회 설치 ▲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권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을 수용했으나, 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 하나는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문제였다. 권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주민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축소 문제였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이런 공공 이익을 위한 재원으로 현행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화 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모두를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의 핵심으로 공권력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대표적인 기제인 내용 규제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민간 자율 규제모델을 포함한 모든 내용 규제 정책에 반대했으며,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 즉각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33개 공약 및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보 대통령을 찾아라>>(http://www.IT-preside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붙임 2 :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 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불일 1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구 분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김영규
표현의 자유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위한 기구 설치	✓	△	○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동성애)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사상 / 역사관)	✗	○	○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단	✗	✓	○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및 민간자율화	✗	✗	○	○
프라이버시	선거시기 네이티즌의 정치토론 보장	○	○	○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	○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	○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	○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	○	○
	스팸메일 옵트-인 법제 도입	✗	✗	○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항 폐지	○	✗	○	○
주민등록	노동자 감시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도입	○	·	○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	✓	○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중단	·	✓	○	○
	주민등록번호의 신분증 발급 일련번호로의 변경	·	✓	○	○
정보 공유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	○	○	○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	○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공유 인정	△	△	○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접근 보장	✓	·	○	○
	영업방법 특허 금지	✓	·	○	○
	디지털콘텐츠보호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	✗	✓	○	○
	정보통신부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	✗	○	○
정보 접근	민간 주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보장	✓	✗	○	○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	○	○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	○	○	○
행정 규제	초·중·고 인터넷선 무상 제공	○	○	○	○
	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	✓	○	○
	정보화 촉진 기금 축소 및 집행 투명성 강화	○	✓	✓	○
	이동전화 요금 인하	○	✗	○	○

범례 : ○ 전면 수용 ○ 다소 긍정적 △ 신중한 입장 ✓ 다소 부정적 ✗ 강하게 부정 · 입장 없음

○ 물 임 2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시대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는 제각기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소외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새로운 기구의 설치일 필요는 없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의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독립적 상설기구의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정보통신 공약을 크게 4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분야를 정보화 역기능 방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정보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기본권으로 정보 평등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의 3개 권리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사생활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각각 제시했다.

○ 김영규 후보는 현재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공권력을 들고 있으며, 인간 안보와 인간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정보사회인권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민중의 접근권 향상, 사이버 권리 제고,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반인륜적 관행, 규제, 규정들의 폐기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8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과 사상/윤리 관련 조항 폐지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민간 자율화 ▲ 선거 시기 네트즌의 정치 토론 보장

○ 이회창 후보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 후보는 현재의 규제 정책 역시 자율 규제와 기술 규제에 관한 논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행정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을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상과

역사관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현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정책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노 후보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장관의 승인권 및 업무 보고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후자의 내용등급제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문제를 피해나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동성애 관련 조항의 경우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사상/윤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트즌의 지지가 높은 후보답게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은 보여주었다. 권 후보는 음란물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음란물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성평등 교육 등 미디어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 기구인 (가칭) 인터넷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사후 심의와 핫라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문화관광부로 소관 부처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단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법을 통해 강제하면 검열 행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그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법 관련 정책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 토론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으로 가중 처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김영규 후보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민간자율적 규제 방식조차도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당연히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폐지, 차단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에 대한 거부 등 관련 규제 조항 일체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 프라이버시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7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스팸메일 관련 옵트-인 법제화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조항 폐지 ▲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이회창 후보는 중간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필요성 및 영향평 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를 공약사항으로 명시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업의 관리권이 노동자의 동의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본법에 관한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현행 옵트-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영향평 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 기본법 제정, 스팸메일 옵트인 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기본법 제정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라밸링/필터링 방식이 옵트-인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까지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들은 행정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들이다.

또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프라이버시 정책 제안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긍정적이었다.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으며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법의 제정은 권 후보의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4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의 중단 ▲ 평생고유번호인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 발급 일련 번호로 대체 ▲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특별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감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른 세 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만 점진

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노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주민등록업무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에 대해서도 점진적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의 경우 중단할 수는 없으며, 여권 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또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수집하는 데 제약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 중단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생활보호위원회 같은 반감시 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네 후보 중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 공유의 권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6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 영업 방법(BM) 특히 금지 ▲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안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 조항 철회 ▲ 정보통신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직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반대

○ 이들 요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답변은 다소 모호하면서도 산업 발전 위주의 시각이 엿보였다. 이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법률 및 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M 특히 역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 열람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WTO, TRIPs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둘 다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 것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후보의 답변은 IT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사법 경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조화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이한 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의 BM 특허, 보건복지부 소관의 글리백 강제실시, 문화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디지털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리백 강제실시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 권영길 후보는 창작자나 기업의 이해보다는 공공성과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권 후보는 P2P 서비스가 기존의 사적 대여나 복제와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는가 하면,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면책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저작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답하여 '이용자와 창작자의 균형'이라는 원론만을 내세운 후보들보다 좀 더 진전된 고민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전면 수용했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6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주도의 현행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회창 후보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국민과 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여, 다소 애매한 가운데서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역시 도메인 선점 등의 역기능을 예로 들면서,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주소자원 관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도의 보완책을 밝히고 있다.

○ 권영길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 초·중·고 인터넷선의 국가부담 제공

○ 이회창 후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포괄적 정보미공개 사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농어촌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공적인 정보 접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후보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수요 창출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시행중인 256Kbps 이하 회선 무료 제공 이외에 256Kbps 이상 회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갈 것을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 정보제공 시간의 단축, 민간 기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감시와 감독 등을 약속했다. 또한, 권후보의 핵심 공약인 무상 교육에 걸맞게, 교육에 관련된 인터넷망 역시 무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도, 정부 구매 및 개발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리하게 표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윈도 등 기존 상용 OS의 공공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3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 정보화촉진기금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이동전화요금의 OECD 국가 평균(1만원 내외)으로의 인하

○ 이회창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와 집행 투명성 확립과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노무현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과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는 동의를 했으나,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정보화촉진 기금의 축소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노 후보는 반대의 근거로 현재 평균 수준 이상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이 사실상 OECD 수준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 권영길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에 대해서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통신위원회를 정보 접근권 보장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 승격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확대 재정 정책을 펴는 권 후보의 정책에 걸맞게 정보화촉진 기금의 축소에는 반대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같은 공공적 목적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끝>

市道別 住民登録證 發給 現況('02. 6.30 현재)

(단위 : 명)

전국민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에 동참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모임, 서울영상집단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만17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운동단체입니다.

실질적인 효용성이 전혀 없는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일제 식민시대의 유산인 지문날인 제도를 박정희가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야만적인 제도를 철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청원에 사용됩니다.

※ 자세한 지문날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은 홈페이지 <http://finger.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활동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원치 않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9월 말 모임을 갖고 그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명현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심지어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신념이 간첩이 아니냐는 비아냥의 대상마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저항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대응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결성하고 앞으로 지문날인 철폐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그 첫사업으로서 지문날인 거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집된 사례는 분석을 거쳐 언론매체 등에 공개함으로써 지문날인과 관련한 피해를 사회문제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면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구 주민등록증의 효력 인정 등을 요구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미약한 십지지문원지의 경찰청 이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한 지문날인 제도에 제동을 거는 시발점을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께서는 피해사례 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해사례 수집은 앞으로 진행될 많은 법적, 사회적 운동에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20일(토)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특히 지문날인 제도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영상집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시연하는 시사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피해사례 설문조사'

이 설문은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여 1)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2) 수령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과거 지문날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피해경험이 있으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의 내용은 통계와 이후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1. 인적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연령대는 어떠합니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2. 직업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 이상 연구자()
- 회사원()
- 공무원()
- 자영업()
- 주부()

- 교직자()
- 의료인()
- 법조인()
- 종교인()
- 언론인()
- 예술인()
- 농림업/축산업/수산업()
- 무직()
- 기타직업(직접 써주십시오 : _____)

3.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_____ @ _____)

II.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1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간신을 취소하고 싶었다
12.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전화로 회유,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13.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반장이 가족 등 주위사람에게 강요한 적이 있다
14.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로 가족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15. 동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이 집으로 배달되거나 대문에 붙어 있었다
16.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17. 벌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18. 주민등록증 간신 거부자 명단이 공개적으로 대자보로 붙거나 방송되었다

19. 기타

III.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21. 은행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해당하는 거래명을 써주십시오 : _____)
 22. 인감증명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23.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다
 24. 여권,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25. 학위 등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볼 수 없었다 (해당하는 시험명을 써주십시오 : _____)
 26. 핸드폰과 관련하여 가입, 분실, 해지, 변경 등을 할 수 없었다
 27. 국가, 공공기관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해당하는 기관명을 써주십시오 : _____)
 28. 주민등록증 간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29. 본인의 동의없이 구주민등록증을 통해 지문을 스캔당했다
 30. 인사상의 불이익주겠다는 협박 등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써주십시오 : _____)
 31. 본인의 동의없이 플라스틱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32. 불심검문시 지문조사를 받았다
 33.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처 등으로부터 신분증명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받았다
 34.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5. 기타
-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http://www.idlaw.net>)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만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는가?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 통제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68년 공화당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던 때였죠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오늘날에 타당할까요?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 통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만17세 이상의 전국민을 상대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문을 경찰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맘대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문은 대단히 소중한 국민의 신체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한때 재일외국인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제했었습니다만, 국제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 99년에 완전폐지됐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문날인은 명백한 어거지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와 관계 없습니다

경찰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범인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할까요?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에서도 지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확률은 1%도 되지 않더군요. 지문은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까요? 경찰은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함께 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쓰지 맙시다”

-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매주 화12시 정부종합청사)
- ♣ 지문날인 제도철폐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격주 토 2시 대학로)
- ♣ 사회생활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 쓰고 지문날인 안하기 실천 운동

* 자세한 내용은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finger@jinbo.net)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이즌 ·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결성 이후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 국가등록개인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승소)
-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전국 순회 상영과 일본 상영
-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법원 진행중)
- 십지지문원지 반환 · 폐기 · 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 (진행중)
-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 1인 시위와 전국민 서명운동 (진행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전문가 토론회

**국민이 요구하면 지문날인 제도, 없앨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하십시오!**